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**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표준약관 개정**

□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정(안)을 마련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변경을 예고함.

- 현행 표준약관은 '05.2월 최종 개정된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, 그간 상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함.
- 아울러 통신판매 확대에 따른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 사항을 발굴하고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해설 등도 포함함.

□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, 자살 및 자사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,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 등 총 24개 사항에 대한 개정(안)을 마련함.

-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 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금의 15일에서 30일로 변경되며, 보험약관 교부 시점도 계약체결 시에서 청약 시로 변경되어 소비자의 계약 해지 기간이 6개월까지로 확대됨.
-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고의적인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제한함.
- 이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지급한도를 현행 최고 4,500만원에서 최고 5,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치아 보철비용과 고도후유장해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음.

□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(안)은 홈쇼핑 등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이 확대되고 보험계약 청약단계에서 약관이 전달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게 될 것임.

- 또한 일부 모호한 약관조항의 명확화 및 용어해설 등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도가 증진되어,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의 사전방지에 도움이 될 것임.

(보험상품 표준약관 개정 추진,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, 손해보험서비스국, 12/20)